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근린공원)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806
----------	------

2020. 9.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개 요”

- 이 의견청취안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강남구 율현동에(율현공원·돌산공원 인근) 근린공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근린공 원	강남구 율현동 145-3번지 일원	-	증)44,920	44,920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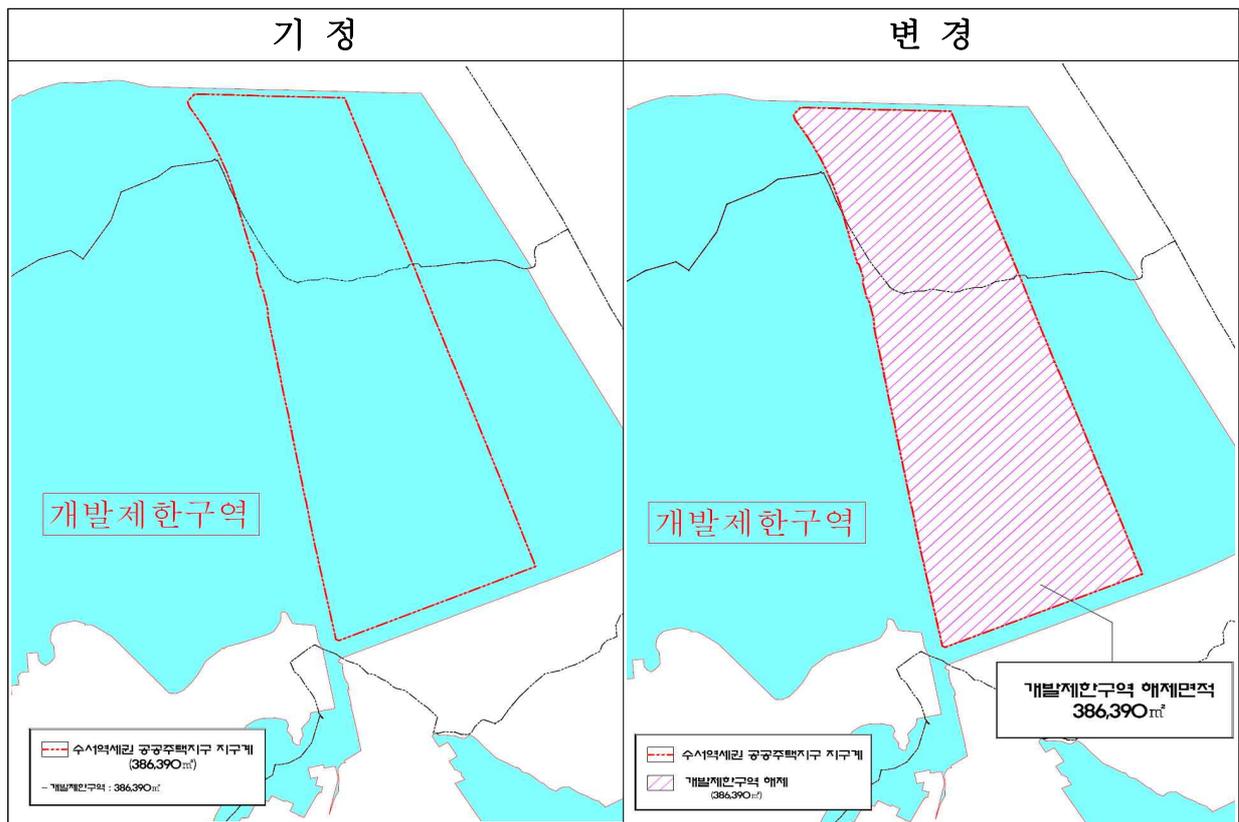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훼손지 복구사업”

-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복구하는 사업으로서,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되어 있는 가운데(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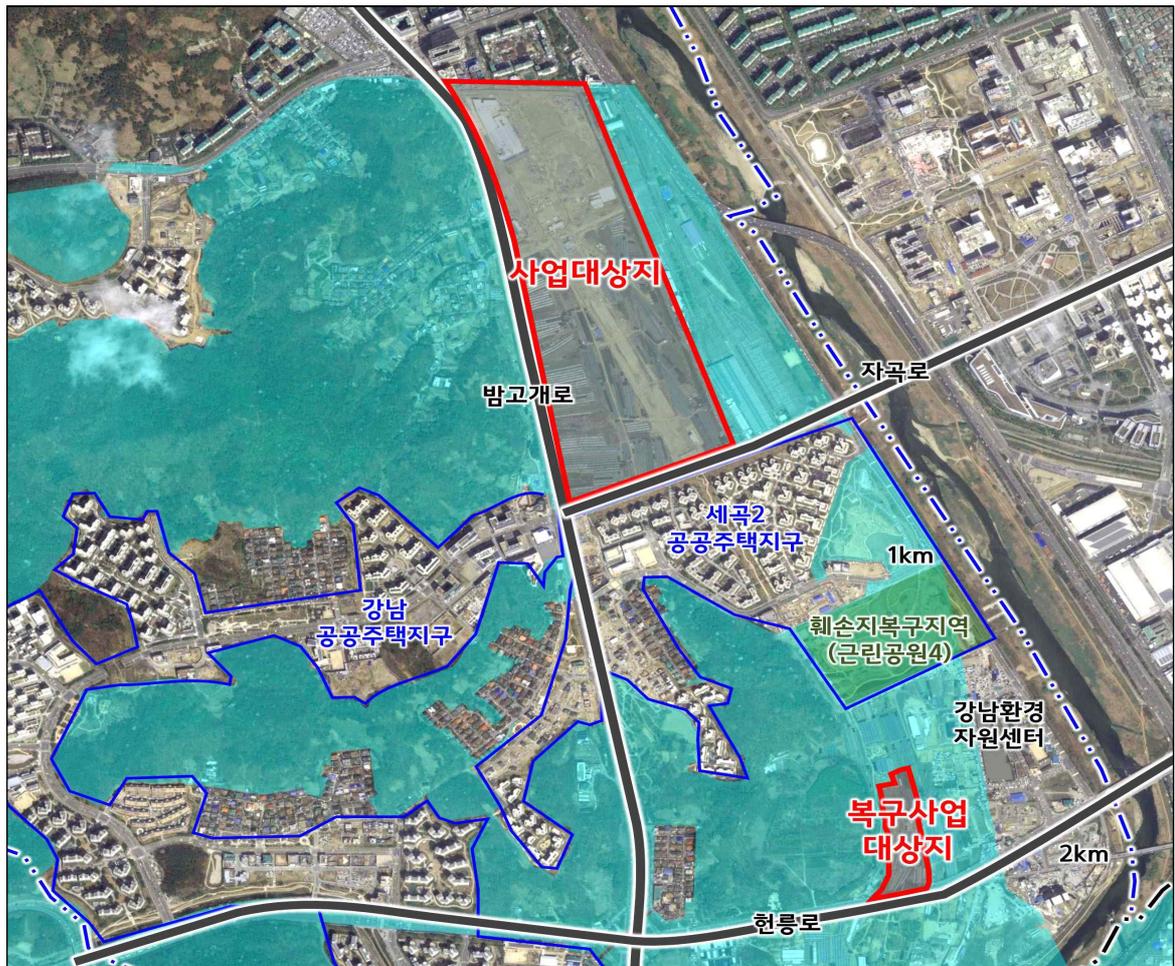
이 의견청취안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붙임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386,390㎡), 이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의 대상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려는 것임.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도〉



-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는 총 6곳이 검토된 가운데(붙임3), 국토교통부와 강남구·서울시 간 협의에 따라 율현동(145-3번지 일원)으로 선정되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음¹⁾(17.9.28.).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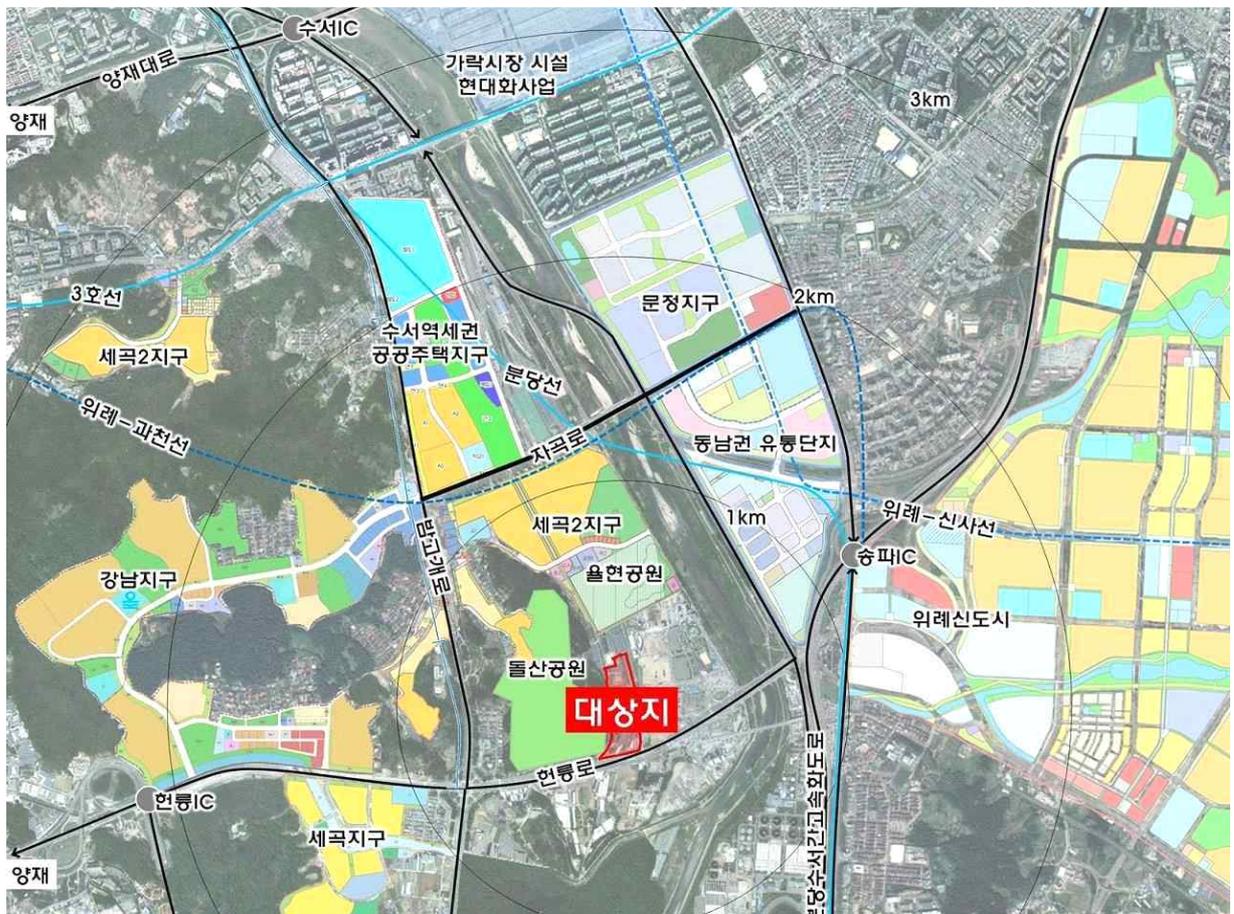
“현황과 계획”

-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386,390㎡)의 11.6%인 44,920㎡로서 창고·비닐하우스·고물상·농경지 등이 주로 분포해 있고, 인

1)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안) : 조건부 의결
 - 자연생태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
 - 주변의 토지이용과 연계하여 생태복원이 가능하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

근에는 빗물펌프장·주말농장·자동차매매단지·자동차검사소 등이 입지하고 있음.

대상지 북측으로는 율현공원, 서측으로는 돌산공원, 동측 및 남측으로는 각각 탄천과 세곡천이 흐르고 있어 환경적으로 다소 단절된 지역이라고 보여지며, 대상지 일대 주변으로는 동남권유통단지·세곡2 공공주택지구 등이 개발 완료되었거나 개발 중임²⁾.



2) 동남권유통단지는 2019.12.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세곡2공공주택지구는 사업 진행 중임

- 훼손지 복구사업지를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대상지 일대에 불법 경작이나 불법 형질변경(주차장 사용 등)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는 한편, 강남·세곡·문정 지구 등 주변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서 활용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며,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금액과 훼손지 복구사업지 사업비의 매칭도 (537억원)³⁾ 주요히 감안된 것으로 사료됨.

〈훼손지 복구사업비 예상 산출내역 (자료:시설계획과)〉

구 분	금액(백만원)	비 고
용지비	42,611	- 토지보상비 : 36,948 백만원 (유상공급토지 35,942㎡ × 지목별 적용단가) - 지장물비 : 1,950백만원 (비닐하우스 130동 × 보상단가 15백만원/동) - 기타비용 : 3,713(간접보상비, 제세공과금, 기타매수비)
조성비	8,871	- 조경공사 : 7,827 (단위공사비 : 150,000원/㎡) - 가로등공사 : 1,044 (단위공사비 : 20,000원/㎡)
기타 부대비	2,283	-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 (용지비+조성비의 4~5%)
계	53,765	

* 최종 복구사업비는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 후 결정

** 복구사업 시행시기 : 지구계획 승인일 ~ 2024년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 준공(21년 예정) 전에 착수하여 착수 후 3년 이내 준공)

- 훼손지 복구사업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 중 SH공사에서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⁴⁾, 공원 조성

3) ○부담금 산정

해제대상지역(하천, 제방 등 존치시설 제외)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 해제대상지역의 전체면적 × 100분의15 : 사업지구 전체필지(567필지, 386,390㎡)의 '17.5월 개별공시지가 평균치(927천원/㎡) × 15% × 해당 지역 면적(386,390㎡) = 537억원

○대상지 사업비 산정(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산정 금액) : 537억원

- 4)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SH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비 및 수익을 기관별 지분율에 따라 분담·정산) 가운데, SH공사는 '업무·유통시설 용지 도입용도 계획수립' 업무와 '훼손지 복구사업'의 보상 및 공사, 공급업무를 수행함

후에는 강남구가 관리할 예정임5).

- 대상지의 공원 조성 계획을 살펴보면, 인근의 율현공원이 세곡2공공 주택지구와 인접하여 커뮤니티공원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었고, 돌산공원은 산지형 휴양공원(캠핑장, 축구장 등)으로 조성될 계획인 가운데, 대상지는 체육시설 및 산책로, 조경시설 위주로 계획되어 있음.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계	44,920	100.0	
산책로	8,220	18.3	
조경시설	32,598	72.6	잔디밭, 식재 등
운동시설	3,519	7.8	테니스장 등
편익시설	583	1.3	주차장 등

구분	지분율	담당업무			
		본지구		혜손지	
		인허가/설계/공사/공급	보상	인허가/설계	보상/공사/공급
KR	45%	협조	담당구역	총괄시행	협조
LH	45%	총괄시행	담당구역	협조	협조
SH	10%	업무·유통시설용지 도입용도계획 수립	-	협조	총괄시행

5)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근린공원에 해당되어 자치구에서 관리(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 5])

“공원 결정의 타당성”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을 위한 대상지 선정과 공원 결정에 있어서, 대상지 일대의 훼손지 확산을 방지하고 율현공원과 돌산공원을 연계하는 공간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북측 율현공원에 인접하여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가 발생됨으로써 율현공원과의 직접적 연계성 확보는 미흡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산정된 부담금을 감안하여 사업비와 대상지가 결정된 결과로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이해됨.



“공원 조성 계획의 적합성”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는, 공원 내 시설물 설치보다는 생태복원적 녹지기능 제고가 중요하고⁶⁾, 탄천·세곡천·보전산지 등으로 둘러

6)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0조(복구사업의 유형) ②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공원 내 시설물의 입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생태복원적 녹지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싸인 대상지 입지 특성상 주민들의 보행 접근성이 부족하며, 인근의 율현공원·돌산공원이 각각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 및 휴양공원(체육 시설 조성)으로 기능할 것이므로,

대상지의 공원 조성은 현재 주민여가를 위해 계획된 조경시설·운동시설 중심보다는 공원의 생태환경성을 높이는 계획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가 가능함에도('16.5. 규정 신설, 붙임4) 서울시는 현재까지 공동 심의를 한 바가 없는데, 공원의 형상·경계와 공원 조성 계획의 통합적 접근이 중요할 경우에는, 제도 취지를 살려, 관련 위원회가 공동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연 락 처	02-2180-8206
이 메 일	rienrien@seoul.go.kr

<붙임1>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100분의 15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바다·하천·도랑·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을 제외한다.

②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 당시 그 직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부담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복구를 하려는 훼손지(이하 "복구사업지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하 "입안권자"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그 지역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려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이 속한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을 것. 이 경우 훼손지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2. 복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은 달성하는 효과가 클 것
3.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을 것

제2조의3(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① 훼손지 복구계획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3. 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
4. 복구사업지역의 지장물(支障物)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
5. 복구사업의 시행시기
6. 복구사업에 드는 재원 및 투입계획
7. 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
8. 복구사업지역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9.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4항 및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훼손지"란 구체적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주택·상가·공장·창고·사무실 등 건축물이 건축된 지역
 - 나. 축사 등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비닐하우스는 창고나 주거 등 비농업용으로서 사용되는 경우 또는 해제대상지역 주변으로 녹지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장래 훼손우려가 높은 지역에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이 설치된 지역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

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2. "복구사업지역"이란 법 제4조의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복구사업비"이라 한다)이란 용지비용, 용지부담금, 조성비용,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훼손지의 판정) ① 훼손시설이 설치된 지번 중 훼손시설(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번 모두를 훼손지로 판정한다. 다만, 100분의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훼손지로 판정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에 따라 지적이 분할되었거나 분할 예정인 경우에는 그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의 요건에 부합하는 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면적 전체 또는 일부를 훼손지로 판정할 수 있다.

제6조(복구사업지역의 선정기준) ① 복구사업지역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다.

1. 영 제10조제2항제2의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그 복구계획"이 반영된 지역

2. 복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지역으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

가. 친환경 보전법령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7등급, 생태계 보전지역, 천연기념물 서식처 등 생태민감지역 인근에 위치한 지역

나.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입안권자가 시급히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다.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하여 무분별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지역

라. 도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차단녹지, 완충녹지, 시설녹지 등 녹지확보가 필요한 지역이거나 광역녹지축, 도시녹지축 등의 기능이 큰 지역

3. 대중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도시민의 여가이용이 가능한 지역

4. 개발제한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조성되지 않은 공원

제7조(복구사업지역의 선정 요건) ① 복구사업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3조제1호에 따른 "훼손지"로 하되 다음과 같은 지역을 포함하여 복구할 수 있다.

1. 사실상 대지화되는 등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2. 복구사업지역의 정형화 등 복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훼손지 주변으로 불가피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판정된 훼손지를 2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 등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복구사업지역의 개소당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훼손지가 산재되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실태에 따라 소규모의 복구사업지역을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사업의 유형) ① 훼손지 복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1. 원형복구 : 원래의 지목에 맞는 용도로 복구
 - 가. 원형복구가 가능한 지목은 과, 전, 답, 목, 임, 천, 공원 등으로 한정한다.
 - 나. 원래의 지목에 맞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훼손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물은 철거한다.
 - 다. 토지는 매수하되 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원래 지목의 용도로 원형복구하고 유지·관리한다.
 - 라. 도시민의 여가 및 영농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텃밭 또는 주말농장 등 영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공원·녹지조성사업
 - 가.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 자연적인 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민들의 친환경적인 휴식공간 제공
 - 나. 도시공원 : 도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
 - 1) 생활권 공원 :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 2) 주제공원 :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 시·도 조례가 정하는 공원
 - 다. 녹지 : 소음, 공해 등의 방지, 도시경관 향상,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제공
 - 1) 완충녹지
 - 2) 경관녹지
 - 3) 연결녹지

②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공원 내 시설물의 입지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생태복원적 녹지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의2(훼손지 복구사업 완료시기) 훼손지 복구사업은 본 개발사업 준공 전에 착수(실시계획승인·인가)하여야 하며 착수 후 3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착수 후 3년 이내의 시점이 본 개발사업 준공보다 이전인 경우에는 본 개발사업 준공시까지로 할 수 있다.

<붙임2>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자료: 시설계획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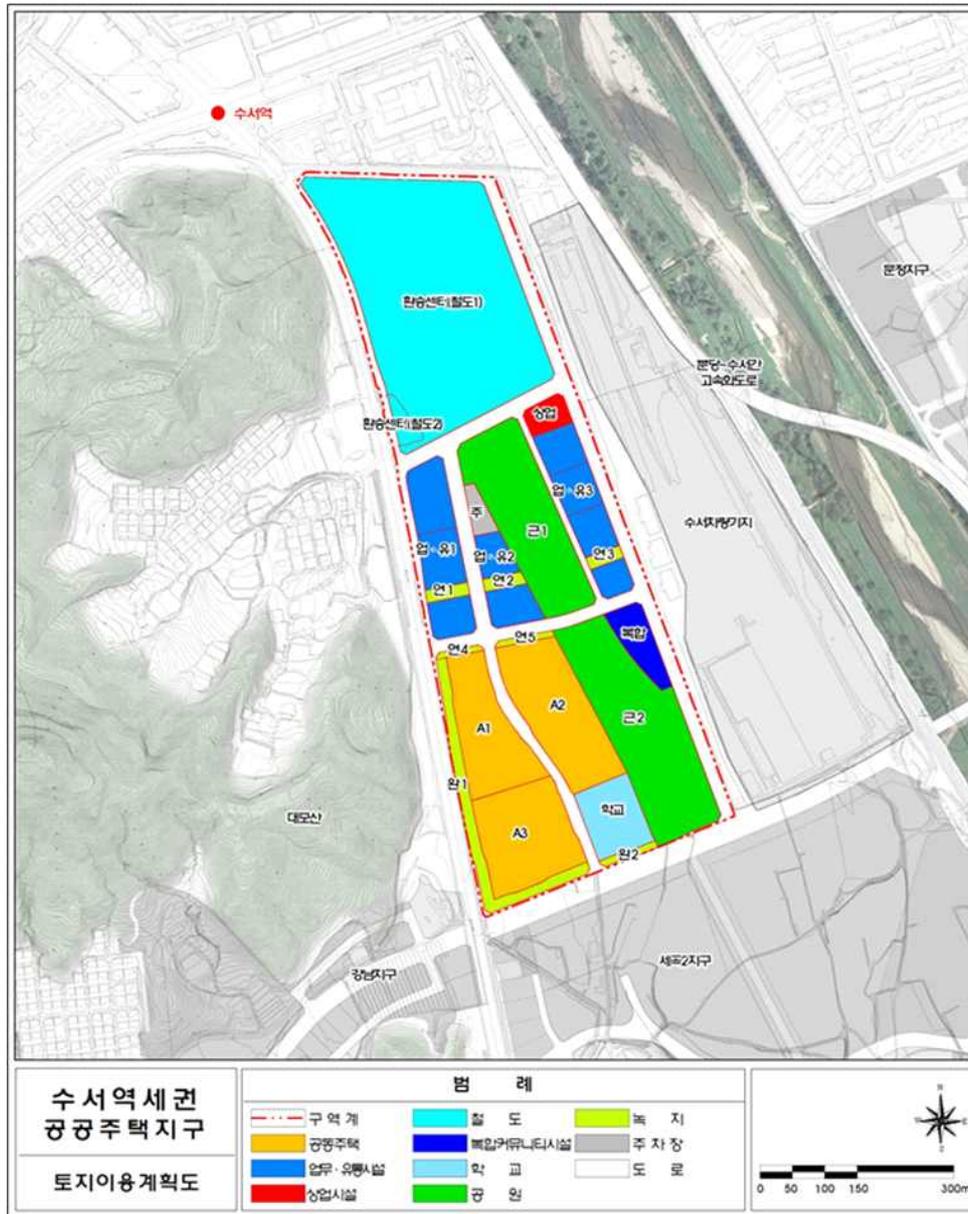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원
- 면 적 : 386,390㎡(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 386,390㎡)
- 사업기간 : 지구지정 고시일(2016. 06. 29.) ~ 2021. 12. 31.

구 분	주 요 내 용			
	구 분	면적(㎡)	구성비(%)	
· 용도지역	합 계	386,479	100.0	
	주거지역	소 계	111,803	28.9
		제2종일반주거지역	12,986	3.4
		제3종일반주거지역	88,541	22.9
		준주거지역	10,276	2.7
	상업지역	소 계	196,536	50.9
		일반상업지역	196,536	50.9
	녹지지역	소 계	78,140	20.2
		자연녹지지역	78,140	20.2
	· 주택건설계획	총 2,531호(행복주택 1,910호,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621호)		
· 사업시행기간	2016.6.29.(지구지정고시일) ~ 2021.12.			
· 사업방식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 사업시행자	철도용지 : 한국철도시설공단(단독개발) 그 외 용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공동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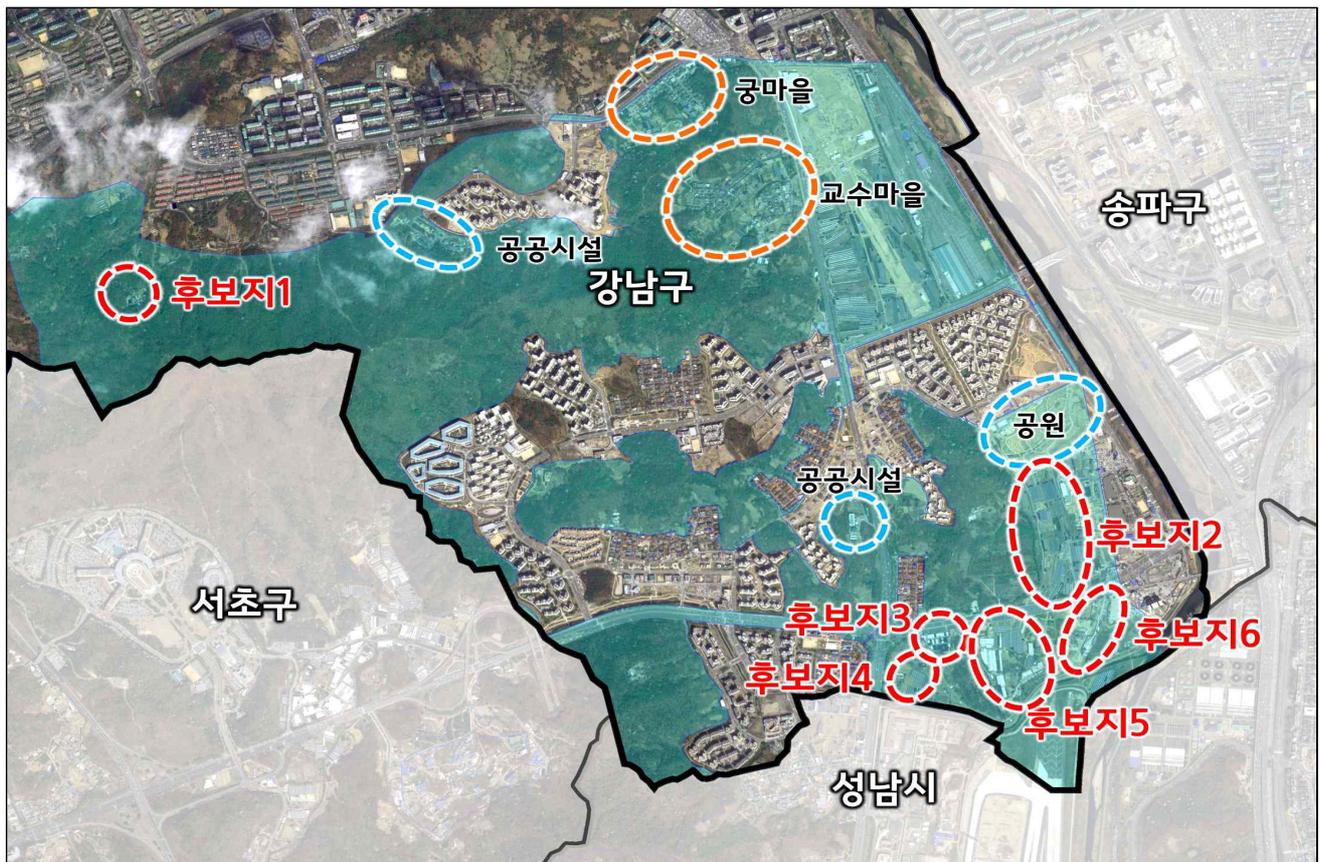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비율(%)	비 고
총 계		386,479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67,467	17.5	
	공동주택	67,467	17.5	2,531호
공공시설용지	소 계	319,012	82.5	
	업무·유통	41,189	10.6	
	상 업	3,301	0.9	
	환승센터(철도)	102,208	26.4	
	복합커뮤니티	6,385	1.7	
	학 교	10,624	2.7	1개소
	공 원	71,368	18.5	2개소
	녹 지	16,202	4.2	7개소
	주 차 장	2,358	0.6	1개소
	도 로	65,377	16.9	

<붙임3> 훼손지 복구사업 후보지(자료: 시설계획과)

구 분	소 재 지	검토결과
후보지-1	일원동 441전 일원	1만㎡ 미만이므로 대상지에서 제외
후보지-2	율현동 145-3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임야 보전 및 개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훼손지 복구 필요 ○ 여가공간 조성시 접근성이 용이하여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 인근 지역과 연계 녹지축 기능 확보 가능하므로 훼손지 복구 사업 추진 적합
후보지-3	율현동 74-4임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처에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지 않아 여가공간 조성시 이용도가 낮을 것으로 보이며 ○ 녹지축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대상지에서 제외
후보지-4	세곡동 152답 일원	
후보지-5	세곡동 78-1전 일원	
후보지-6	세곡동 30전 일원	1만㎡ 미만이므로 대상지에서 제외



<붙임4> 공동 심의 관련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신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획의 수립·승인·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같음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해당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할 것
 -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부시장
 - 나. 도·특별자치도의 경우: 부지사